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3-008호**

시정권고 재결

2023년 1월 26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08호(시정권고 재결 공고[(부산해심 제2023-001호)어선 동우호 · 냉동냉장선 시에라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동우호 · 냉동냉장선 시에라(SIERRA) 충돌사건

피요청자 : 밥\* \*\*\*\* (리\*\*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시에라가 2021. 10. 22. 18:29경 부산항 제2항로 내 3번, 4번 부이 사이 해상인 북위 35도 03분 21초 · 동경 129도 02분 02초에서 동우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동우호가 시에라를 뒤따라가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前方)에 있는 시에라를 피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나, 시에라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항행 중 경계를 철저히 하고,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 기적을 울리고 필요시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